

#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 법령

※ 아래의 내용은 현재까지 확인된 일부 법령만을 포함하고 있음

## □ 요약표

근거 법령		내 용	해당 사업자
금융실명 거래법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금융회사</b>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의무를 가짐                      ※ 실지명의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여권번호)</li> </ul>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등
신용정보 보호법	제3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신용정보회사</b>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부터 본인의 동의를 얻은 뒤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li> </ul>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전자상거 래소비자 보호법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사업자</b>는 거래 기록 및 그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보존해야만 함</li> </ul>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업자
전자금융 거래법	제6조, 제7조,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b>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만 함</li> <li>-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보존해야 함</li> <li>- 5만 원 이상의 전자화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실지명의 필요</li> </ul>	전자금융업 자
조세특례 제한법	제126조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위해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가능(다만 주민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하므로 선택사항이 되어야 할 것임)</li> </ul>	현금영수증 사업자
부가가치 세법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에 공급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번호 기재</li> <li>-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에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주민번호 기재</li> <li>- <b>통신판매업자</b>가 부가가치세 납부 등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부가통신사업자)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납세관리인 선정 신고서에 통신판매업자 주민번호 기재</li> </ul>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일반 사업자)
소득세법	제14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주민번호 기재</li> </ul>	원천징수의 무자

근거 법령		내 용	해당 사업자
		- 기타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시, 기타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12조, 제14조	- 병원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에 주민번호 포함	병원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보험협회
자격기본법	제23조, 제34조	- 자격관리자는 자격취득자의 관리 목적 및 자격증 기재사항으로 주민번호 수집·이용 가능	공인자격관리자
관세법	제254조	- 해외구매대행 및 해외배송대행업자는 수입신고서 작성시 수입화주의 주민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수입화주가 구매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해외구매대행업자, 해외배송대행업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60조	-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한 경우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해당 신청시 제출하는 법령 서식에 근로자의 주민번호 기재란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자료 요청 시 주민등록번호제출	
전자서명법	제15조	- 공인인증서 발급시 발급자의 주민번호 요구	공인인증기관
방송법	시행령 제65조	- 방송사업자에 대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자는 방송사업자에게 신청서 제출시 주민번호 기재	방송사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5조의4	-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 작성하는데 이에 주주의 주민번호 기재	벤처기업

[참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법규 상세 검토표

법률	수집주체 (법 적용 사업자)	사유	관련 조항	관련 조문	소관부처	비고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 등(은행, 보험회사 및 카드회사 등)	-금융거래 시 거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로 실지명의 확인	제3조 (금융실명거래)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금융위원회	
			시행령 제3조 (실지명의)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회사 및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은 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부터 본인의 동의를 얻은 뒤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 가능	제34조 (개인식별 정보의 제공·이용)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개인식별정보"라 한다)를 신용정보회사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	- 보험사 및 카드회사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근거
			시행령 제29조 (개인식별정보 의 제공·이용)	시행령 제29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에 관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업자)	-거래 기록 및 그와 관련한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 번호 등) 보존	제6조 (거래기록의 보존 등)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①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공정거래 위원회	- 해당 조항을 근거로 쇼핑몰 등이 주민번호 수집·이용 가능하나

법률	수집주체 (법 적용 사업자)	사유	관련 조항	관련 조문	소관부처	비고
법률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수집·이용
전자금융 거래법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 업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선정 및 발급 시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금융위원회	- 제6조, 제7조, 제16조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근거 조항
			시행령 제6조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시행령 제6조(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동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접근매체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할 수 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는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서면동의[「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		

법률	수집주체 (법 적용 사업자)	사유	관련 조항	관련 조문	소관부처	비고
				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를 얻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는 그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거래의 거래내용 확인을 위한 상대방 정보를 보존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대상기간,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위원회	
			시행령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등)	시행령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등)④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거래내용의 종류(조회거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종류를 말한다)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전자화폐 발행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	-5만 원 이상의 전자화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실지명의와 연결하여 관리	제16조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제16조(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①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화폐발행자"라 한다)는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접근매체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식별번호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 또는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관리하여야	금융위원회	

법률	수집주체 (법 적용 사업자)	사유	관련 조항	관련 조문	소관부처	비고
				한다. 다만,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11조 (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	시행령 제11조(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 ①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현금영수증 사업자(금융위원회에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등록된 자만 가능,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구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용 가능(다만 다른 방식으로 발급도 가능)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준수,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준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준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 현금영수증 사업자만 가능,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불가 - 고시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주민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도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민번호만을 수집·이용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들과 함께 선택 가능하게 하여야 함
			시행령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③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기재 내용·양식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제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2조(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제2조(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결제승인번호와 함께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사업장소재지·거래일자·공급가액·부가가치세·봉사료·합계금액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구매자 라 한다)의 카드(지식경제		

법률	수집주체 (법 적용 사업자)	사유	관련 조항	관련 조문	소관부처	비고
			등)	부 기술표준원이 제정·고시한 국가표준(KS)을 기반으로 제작한 QR 코드, 데이터 매트릭스, 선형 심벌로서 국세청장이 제작하여 배포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련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하나가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기 위하여 "0100001234"로 발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세액 구분 표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 하지 아니한다.		
부가 가치 세법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일반 사업자)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에 공급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번호 기재 ※ 공급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기획재정부	-주민번호 필수(대체 불가) -단, 이용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 공급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 ②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등록번호에 같음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률	수집주체 (법 적용 사업자)	사유	관련 조항	관련 조문	소관부처	비고
소득세법	원천징수 의무자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영수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 의 발급)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법률의 원천징수영수증 양식에 주민번호 포함
			시행령 제193조 (원천징수영수 증의 교부)	시행령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③법 제1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의료법	병원	-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의 기재사항에 주민번호 포함	제17조(진단서 등)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	보건복지부	



법률	수집주체 (법 적용 사업자)	사유	관련 조항	관련 조문	소관부처	비고
				<p>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출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출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출 수 있다.</p> <p>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p>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p>1. 환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p>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p>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p>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p> <p>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p>		

법률	수집주체 (법 적용 사업자)	사유	관련 조항	관련 조문	소관부처	비고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적어야 한다. 다만, 질환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病歷) 및 가족력(家族歷) 2. 조산기록부 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보험업법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보험협회)	-위탁받은 업무(시행령 제102조 규정 업무)의 수행 목적	시행령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금융위원회	
자격기본법	공인자격관리자	-공인자격취득자의 관리 및 자격증 기재사항으로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⑤공인자격증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시험접수시는 주민번호

법률	수집주체 (법 적용 사업자)	사유	관련 조항	관련 조문	소관부처	비고
		주민번호 수집·이용 가능	시행규칙 제6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로 정한다. 제6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인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자격취득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고용노동부	수집·이용 불가, 합격자에 한해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34조(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제34조(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④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 및 활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제32조(자격에 관한 정보의 내용 등)		제32조(자격에 관한 정보의 내용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가자격관리자와 공인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자격취득자의 인적사항			
관세법	해외구매대행업자 또는 해외배송대행업자	-수입통관시 수입신고서 작성을 위해 구매자의 주민번호 필요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수입신고서 기재사항에 수입화주의 주민번호 필요(붙임1참조)
			시행령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법 제2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특별통관 대상 거래물품 또는 업체 2. 수출입신고 방법 및 절차 3. 관세 등에 대한 납부방법 4. 물품검사방법 5.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 제2-2조(수입화주)	제2-2조(수입화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화주가 된다. 1. 제1-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국내구매자 2. 제1-3조 제4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		

법률	수집주체 (법 적용 사업자)	사유	관련 조항	관련 조문	소관부처	비고
				우에는 전자상거래업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수입신고)	제12조(수입신고) ①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 작성요령(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첨부서류 없이 법 제327조제2항에 따라 전송하는 것(이하 "P/L신고"라 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청구를 위한 지원서(법령 서식) 작성시 훈련생의 주민번호 기재	제41조(사업주 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제41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④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원범위, 지원상한액 및 지원신청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기재사항에 훈련생의 주민번호 포함(붙임2 참조)
			제60조(사업주 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	제60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훈련이 끝난 후나 매 3개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분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훈련기관에게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훈련기관용)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기통신 사업법	전기통신 사업자 → 수사기관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자료 요청 시 주민등록번호 제출	제83조 (통신비밀의 보호)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	지식경제부	-전기통신사업자 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요청에 따를 수 있음

법률	수집주체 (법 적용 사업자)	사유	관련 조항	관련 조문	소관부처	비고
				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서명법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발급 시 발급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신원확인	제15조 (공인인증서의 발급)	제15조(공인인증서의 발급) ① 공인인증기관은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 급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시행규칙 제13조의2 (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① 공인인증기관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실지 명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 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 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의 경우에 는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 명 및 등록번호)		
방송법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에 대해 정보 공개 요구시 제출자료	시행령 제65조(정보의 공개)	제65조(정보의 공개) ① 법 제9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 사업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 용을 받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종합·보도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의 공 개를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 보공개신청서를 방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방송통신위 원회	
벤처기업육 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	-주식교환시 주주의 주민번호 기재사항	제15조(벤처기 업의 주식교환)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③ 제1항에 따라 주식 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5.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중소기업청	
			제15조의4(신주	제15조의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② 제1항		

법률	수집주체 (법 적용 사업자)	사유	관련 조항	관련 조문	소관부처	비고
			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p>에 따른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p> <p>4.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p>		

# [붙임 1]

⑫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 관련사항 기재	
- 소재지 부호	AN	3	C	C	EDI	-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우편번호 앞 3자리 기재	- 302
- 주소	AN..	40	M	M	공통	-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기재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5
- 상호	AN..	28	M	M	공통	- 납세의무자의 상호를 기재	- 모나리자(주)
- 전화번호	AN..	15	M	M	공통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 042-1234-5678
- 이메일 주소	AN..	30	M	M	공통	- 이메일 주소 기재	- 홍나리
- 성명	AN..	12	M	M	공통	- 납세의무자의 성명을 기재	- 모나리자1771025
- 통관고유부호	AN	15	C	X	공통	- 관세청장이 지정한 통관고유부호를 기재 (개인인 경우 기재 생략)	- EDI : 1122966062
- 사업자등록번호	AN..	13	M	M	공통	-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외국인인 경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여권번호) 기재	- P811111234569 6510071645915 FUS1234567890
- 사업장번호	AN	4	C	X	공통	* 외국인의 여권번호 기재시 앞자리에 "F"를 기재한 후, ISO국가코드 2자리와 여권번호를 이어서 기재(13자 이내) - 사업자단위 과세적용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해당 사업장 일련번호 <작성례> 본사 : 0000, 지사 : 0001 ~ (지사는 해당번호 기입)	- 서류: 112-29-66062 P811111234569 651007-1645915 FUS1234567890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훈련기관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알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0일
------	-----	------------

① 수탁훈련기관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② 훈련과정 정보

훈련과정명 (코드번호)	훈련실시기간	지원금신청인원

③ 훈련수료자 명단 및 지원신청금 세부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훈련생유형	비정규직해당여부	사업장명 및 사업장 관리번호	대규모기업해당여부	지원신청금					사업주가 훈련생 또는 대체고용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등							
						총액	훈련비	임금	숙식비	훈련수당	임금	숙식비	훈련수당					
합 계											-							

④ 사업장별 지원신청금 및 계좌번호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주로부터 받은 훈련비용 (1인당 훈련비용)	지원신청 금액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훈련기관대표)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지역본부·지사) 귀하